

1. 개정이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등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 나.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 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다. 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2)
- 라.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3)
- 마. 자금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14. ~ 8. 2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제8조의2는 제8조의5로 하고 제8조의5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8조의2에서 제8조의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심층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단기 전망

2.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국내외 동향

3.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4. 그 밖에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사업재편 관련 자료제출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업종·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재무상황, 연구개발 역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의 목적, 요청 자료의 범위 및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영업비밀이나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로서 제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4(사업재편 필요업종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산업구조, 재무, 고용,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기초·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 및 특성
2. 업종별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력 저하 요인
3. 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제4항에 따른 사업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권고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고와 협의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경영 비밀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5(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산업별·지역별 선도기업·협회·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2를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며, 제17조의2와 제17조의4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위험평가의 유예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기업이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4(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⑦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 대상·방법 등 해당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할 것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자금지원)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공장 설비를 감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법 제28조에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의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2156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 종료 전까지 사업재편계획을 변경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최대 7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 중 변경되지 아니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생략) 1. ~ 2. (생략) <신 설>	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에 따른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제4조(적용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적용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을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 설>

말한다.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이라 한다)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제1호의 기업과 거래를 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제8조의2 (심층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업종의 국내외 동향 및 장단기 전망
2. 업종의 기술 수준 및 국내외 동향
3. 업종 내 기업의 재무 상황
4. 그 밖에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결과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 설>	<u>제8조의3(사업재편 관련 자료제출 요청)</u>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층조사를 위하여, 관련 업종·산업 또는 지역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 재무상황, 연구개발 역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층조사의 목적, 요청 자료의 범위 및 제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u> ③ <u>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은 영업비밀이나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로서 제출 시 해당 기업의 경제적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신 설>	<u>제8조의4(사업재편 필요업종의 선정 등)</u> ① <u>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재편, 산업구조, 재무, 고용,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기초·심층</u>

	<u>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u> 1. <u>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의 범위 및 특성</u> 2. <u>업종별 구조적 문제점 및 경쟁력 저하 요인</u> 3. <u>업종별 구조혁신방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u>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 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사업 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u> ④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문 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할 수 있다.</u> ⑤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재편 필요업종 선정, 제4항에 따른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권고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다.</u> ⑥ <u>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고와 협의에 관한 사항은 기업의 경영 비밀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u>법 제 8조의2</u> 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u>산업별</u> 선도기업·협회·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	제8조의5(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u>법 제 8조의3</u> 에 따른 사업재편지원협의회는 주요 <u>산업별·지역별</u> 선도기업·협회·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의 임직원 및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중

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u>사업재편지원 협의회</u>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무부처의 장이 임명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u>제17조의2(신용위험평가의 유예에 관한 특례)</u>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u>사업재편계획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기업이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제17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u> ① ~ ⑤ (생략)	<u>제17조의3(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u> ① ~ ⑤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u> ① ~ ⑥ (생략) <신 설>	<u>제17조의4(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u>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상생형 사

	<u>업재편 지원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u> <u>1. 지원목적이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 및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u> <u>2. 지원 대상·방법 등 해당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할 것</u>
<u>제18조(자금지원) ① (생략)</u>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u>제18조(자금지원) ① (현행과 같음)</u>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장의 신설·이전·증설을 위한 입지 확보, 공장 건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공장 설비를 감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u>제18조의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법 제28조에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의 경우를 말한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u> <u>① 법률 제2156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 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사업재편계획기간 종료 전까지</u>

	<u>사업재편계획을 변경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최대 7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 중 변경되지 아니한 서류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다.</u>
--	---